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차규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7.

발 의 자 : 차규근 · 신장식 · 김선민
서왕진 · 김준형 · 정춘생
박은정 · 강경숙 · 이해민
김재원 · 황운하 · 백선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및 시행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(이하 “감액배당”이라 함)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.

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(財源)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상법」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
 - 가.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 - 나. 이익잉여금을 재원(財源)으로 하는 금액
 - 다. 그 밖에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8. 제2항제7호에 따른 의제배당(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 한정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

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배당소득) ① (생 략)	제17조(배당소득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 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, 이를 해당 주주, 사원,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 으로 본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「상법」 제461조의2에 따라 <u>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</u> <u>배당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</u>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</u> <u>가.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</u> <u>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</u> <u>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</u> <u>나. 이익잉여금을 재원(財源)</u> <u>으로 하는 금액</u> <u>다. 그 밖에 실질적으로 이익</u> <u>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으</u> <u>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금액</u>
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.	③ ----- -----.

다만, 제1항제1호, 제2호,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(分)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 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 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 ④ ~ ⑥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제2항제7호에 따른 의제배당 (<u>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 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 한정 한다</u>)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